

# 圖書館法座談會會議錄

日 時：

1963年 10月 8日 午後 2時

場 所：

圖協事務局會議室

參 席 者：

崔 洛 久 (國立圖書館長)

申 淳 甲 (文教部 社會教育長)

金 康 鉉 (文教部 法務官)

朴 熙 永 (外國語大學圖書館司書長・圖協常務理事)

司會・李 鍾 文 (圖協事務局長)

**李鍾文**：圖書館界에서 8年前 全國의 圖書館과 圖書館 專門職의 聯合體인 韓國圖書協會會를 設立한 1955년 4月 16일의 創立總會에서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이의 制定을 推進한 以來 8년만에 圖書館法을 갖게 되었습니다. 待望의 圖書館法이 지난 10月 5日 最高會議를通過한 以來 저이들 圖書館人들은 가슴이 벅찬 感을 禁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圖書館法을 推進한 저이 實務者들과 圖書館法의 內容에 밝으신 本協會常務理事 朴先生과 한자리에 모여 그經由와 內容에 關하여 檢討해 봄이 意義 있는 일이라 生覺됩니다.

도리켜 보면 圖書館法의 制定經緯는 文字 그대로 受難의 繼續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圖書館法을 制定함에 있어

文教部의 主務課長이신 中先生이 赴任하셔서 핏치를 올리게 되었는데 좀 失禮의 말씀입니다마는 申課長께서 이 圖書館法을 어떻게 推進하시게 되었는지 이점에 對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申淳甲**：이 圖書館法은 方今 말씀하신 바와같이 全體 圖書館人들의 8年以來의 宿願이 었습니다. 8年前인 1955년에는 우리나라 全國圖書館數는 全部 合쳐 70館에 不過했든것이 現在 450館이란 數로 增加되었음을 볼때 우리의 環境이나 社會的 requirement가 圖書館利用의 必要性을 切實히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圖書館이 急速度로 增加되고 一般의 關心이 高調되고 있는데 그 法的基礎를 이루는 圖書館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것은 圖書館界의 健全한 發展과合理

의인 運營을 爲해 矛盾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文教部로서는 法의in 基礎가 되는 圖書館法의 制定을 서둘러 今般 通過를 보게 된 것입니다.

李鍾文： 그런點 저이들은 圖書館에 對해 理解와 關心이 格別하신 申課長任을 띠시고 圖書館法을 制定케 된것을 고맙게 生覺하고 있읍니다. 특히 文教部에서 法을 다루시는 金法務官께서는 이法을 起草하시며 느끼신點 말씀해 주십시오.

金廉鉉： 내가 이 法을 取扱하면서 처음 느낀것은 法制定에 있어서의 過程입니다. 大概 法이란 어떤 動機에 因하여 만들어지는데 過去 制定된 大部分의 法은 官廳內部의 사람들이 必要性을 느껴 制定하였읍니다. 그러나 今般 圖書館法은 圖書館協會와 圖書館關係者들의 建議와 爭力이 重要한 役割을 했지 않느냐 보는 것입니다. 그間 圖書館法을 制定하면서 主務課長이 세분이나 바뀌었읍니다. 그러면서도 事務보는 사람들 自體는 直接 이 圖書館法에 對한 切實한 要望을 느끼지 못한것을 實際的인 일을 맡고 계시는 分들의 热誠있는 建議와 推進으로 結局은 行政하는 사람을 이끌어 成功시켰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法制定에 있어서도 法務官이란 職責이 大端히 消極의이었음을 未安하게 生覺하여 여기 關聯된 主務課長, 國立圖書館長 圖協이 主動되시어 建議함으로서 制定이 可能하였읍니다.

大概 法을 만드는 動機, 過程에 따라서 法의 效果란 것이 누구가 많이 갖게 되느냐를 決定합니다. 官僚가 그 必要性에 따라 만들어진 法과 實際로 쓰는 私의in 團體가 이를 積極的으로 움직여서

制定하는 法과는 相異합니다. 이 法은 本質적으로 民主主義의in 過程을 끌어 이룩된 것입니다. 다만 그 內容이 잘못되었느냐 또는 現在 欲求하는것이 充分히反映되었느냐함은 앞으로 檢討해보아야 될것입니다만 法制定上의 動機와 過程에 있어서는 民主的인 節次를 거친 것으로 思料됩니다.

李鍾文： 이 法을 制定하면서 특히 金法務官과 저와는 그間 意見衝突도 여러차례 거듭했고 境遇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失禮을 친점이 座席을 빌어 深甚한 謝過를 드립니다. 저이 實務者로서는 보다 낳은 法을 만들려는 一念에서 였읍니다. 法內容에 滿足하지는 않으나 그 責任은 우리의 가난(貧困)에 있을 것입니다. 圖書館法을 推進할當時 일을 맡은當事者인 社會教育課長, 國立圖書館長 그리고 圖書館協會事務局長을 가리켜 三銃士라고 呼稱하드군요. 이번 일에 國立圖書館長께서 苦生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生覺하시는지?

崔洛久： 너무 過分합니다. 金法務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法制定은 圖書館人們의 建議로해서 民主的인 過程을 끌어 이룩되었다고 하셨는데 謙遜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같이 積極 協助해 주신 申課長도 法을 研究하신 分이고 金法務官任과 個의으로 莫逆한 親分을 平素에 갖고 계셔相互協助가 容易했고 더욱이 圖書館法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누구보다도 切實히 認識하셔서 力量을 推進하신結果라 믿습니다. 저는 圖書館에 從事하는 關係上 여러면에서 無理한 要請도 하면서 努力했으나 未洽한 法內容이나마 通過되게 해주신점이 자리를 빌

어 새 삼스례 感謝드리고 싶습니다.

**李鍾文** : 今般 圖書館法의 制定이 끝나고 앞으로 公布만이 남아 있는데 저이를 圖書館人은 지난 8年間 法을 爲해 苦生해 왔습니다. 特히 오늘날까지 圖書館法을 爲해 努力하신 圖書館協會의理事 朴先生께서 過去와 이제 法을 놓고 座談會를 갖는 所感의 一端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熙永** : 圖書館法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制定하자고 論議되기 始作한 것은 1955年 4月 16일이였습니다. 生覺하면 於焉間 8年이 經過하였습니다. 結局 圖書館自體가 發展된 것이 오늘날 圖書館法의 制定을 推進하는 原動力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于先 1955年 4月 協會가創立된後부터 圖書館法에 對한 論議가 活潑했고 그 草案을 처음 作成하였는데 4章 13條로된 公共圖書館法이 였습니다. 그것이 다시 1956年 1月 7日 草案을 作成하였으나 推進途中 流產되었고 1957年 5月 8日, 協會안에 法制定委員會를構成하여 그해 11月 15일 6章 35條의 法草案이 再作成되었습니다. 그안에 國立圖書館에 對한것이 一個章을 이루었고, 大學을 包含한 學校를 統轄해서 學圖校書館이라呼稱하였습니다. 그다음 세번 째로 1958年 7月 다시 內容을 修正했고 行政分委가 構成되어 4章 30條로 된 法草案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을 設置한다는 事項이 包含되었습니다. 이 草案이 國會에까지 論議되어 그해 11月 20日 閣壯植議員이 正式으로 國會에 提議하였으나만當時의 複雜한 國會事情에 依해 廢棄되었으며 1959年 5月에는 네번 째로 協會에서

法案을 再作成하여 4章 35條로 된 法案을 맨들었습니다. 이때는 圖書館法에 關한 關心이 社會的으로多少普及되어 6月에는 韓國日報主催로 이에 對한 座談會도 가졌습니다. 그려던것이 1961年 6月 10日以後 最高會議에建議하여 1962年 7月에는 次官會議에 까지 上程되었다가 廢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4月에着手하여 지난 10月 5日에 비로소 最高會議常任委員會에서 4章 29條로 된 圖書館法이 制定된 것입니다. 8年間 우리가 애써 推進해온 法이 우리가當初構想한 바와는多少差異가 있으나 그래도 法이 우리앞에 놓여 있다고 느낄때 마음 든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하면 우리 圖書館界를 發展시키느냐하는 問題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암니다.

**李鍾文** : 고맙습니다 金法務官과 朴理事의 經過 말씀과 같이 그間 이方面에 關係 있는 분이며 圖書館實務者가 热誠껏 推進하기 爲해 努力を 하였다는 點입니다. 제가 圖書館協會事務局長으로서 말씀드리면去年 1962年에 처음으로 韓國에 全國의 圖書館人이 모여 圖書館大會를 開催하였습니다. 그 理由는 제가 圖書館協會에 와서 느낀點이 果然 韓國에 圖書館法만이 없어서 圖書館이 發展 못한것이니 그러면 圖書館法이 나오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準備하고 法이 不遠나왔을때에 對備하여 우리가 먼저 解決할것은 없느냐, 있다면 무엇이냐 함께 關心을 갖았습니다. 그래서 圖書館大會를 開催하였고 全國에서 史上처음으로 246名이란 現職 圖書館人이 모여 現在 어느 時點에 서있느냐 그리고 圖書館法

을 어떤 方法으로 推進시키느냐 또 저 이들이 그것을 推進하면서 一面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達成하느냐를 2日間 貞摯하게 會議를 가진것입니다. 그기서 느낀것은 法이란것은 官廳에서 必要하여 制定하는것도 있고 法을 制定할때 까지 저이들 스스로가 官廳이 必要를 느끼도록 움직여 認識케 한다는點 우리들의 總力を 어떻게 集中시키느냐 하는점을 摂索하였습니다. 그結果 今年에 또다시 法을 制定코자着手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金康鉉** : 이法案을 제가着手한 것이去年으로 記憶합니다. 去年 이法案이 整理되어 上程될때 實은 저이들로서는 上程되는것을 거북스러 生覺했습니다. 왜냐하면當時 閣議나 次官會議의 空氣로 봐서 通過될수 있는 條項이 內包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올린理由는 圖書館當務者들의 热意가 大端하고 그것이 最高會議에도 反映되어 結局 올리지 않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率直한 말인데 問題는 或 우리의豫想을 뒤엎고 热意로 봐서 通過될수도 있지않겠느냐는 希望에서 上程한 것입니다. 結局, 地方自治團體를 主管하는 部處의 關係者들의 反對로 因해 失敗되었으며 原因은 한말로 要約하면 地方自治團體에다 莫重한 負擔인 施設義務를 지운다는 것이었습니다.當時 우리는 그것에 關해 어떻게 說明했느냐 하면 地方自治團體에서 莫大한 負擔없이도 運營이 可能하다고 固執했습니다. 그때 教育自治制가 廢止되었음에 自治廳이 教育區廳이 必要없게된 建物이 생기어 이를 圖書館建物로 使用하고 圖書

館內部問題는 文敎部社會教育課에서 推進하는 事業과 結付시켜 이 案을 通過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人件費에 關해서는 自治團體가 負擔하면 되겠는 데 그것이 莫大한 額에 達하니만큼 入件費를 別途로 徵收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것을 만들때 그것을 育成하는 것이 더 重要한 意義가 있는것입니다. 키울수 있는 要素를 理想에 맞도록 한다고해서 除去해 버린다면 키워나갈道理가 欲는것입니다. 圖書館協會가 反對하는 몇가지 條文에 對해 그趣旨를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理想만을 被는다면 韓國에서 圖書館法은 遲遠한 後日이나 맨들이 질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圖書館施設을 擴充한다는 点이 이제는 事情이 달라졌습니다. 何如든 그러한 問題로해서 去年에 次官會議結果 保留 撤回되었습니다. 그後로 死藏되다실이 된것이 社會教育課長의 意圖가 하나의 問題點이 되고 出發點이 된것입니다.

妙하게 그法案을 擔當하시고 圖書館法을 다룬던 課長이 國立圖書館長이 되었고 그다음에 市文化課長으로 계시면서 이 法을 잘 아는 申先生任이 社會教育課長이 되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것까지는 잘 되었는데 그後 자칫하면 여러차례 死藏될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最高會議의立法 스케줄에 따라서 그 모든 部處가 스케줄 그대로 움직여 주었으면 될터인데 마즈막날에야 法制處에法案을 提出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長, 次官會議에서 그 많은法案을 마감까지 處理하기가 大端히 어렵게 되어서 結局 64年度豫算 및 아니면

選舉에 關係된것, 그리고 其他 緊急을 要하지 않는것은 民政 뒤로 미룬다는 原則을 세워 이法은 废棄 될뻔 했읍니다. 이러한 事實을 國立圖書館長이 아셔서 나와 甚至於 長, 次官까지 勤員하여 그 스케줄을 바꾸는데 數日 手苦했읍니다. 그때 上程되지 않았다면 成功되기 至難 했을 것으로 生覺됩니다. 왜냐하면 이法案은 어떤 政治的, 行政的 緊急性이 稀薄한 即 權力を 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法이 였읍니다.

그間 最高會議等 여러 關係部處에서 서둘렀기 때문에 잘된것으로 봅니다. 이 法令을 擔當한 自身으로서도 홀가분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오로지 適期에 計劃하고 推進한 여러분의 努力의 結晶이라 生覺합니다. 앞으로 남은 問題는 施設과 職員養成에 있어서 充實化를 期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民衆運動으로 推進하든지 現在 社會教育課에서 擔當하는 讀書運動과 結付시켜 有終의 美를 거두었으면하고 希望하고 있읍니다.

**李鍾文** : 圖書館法을 推進하면서 느낀 點이 또 있읍니다. 이 法이 權力を 要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關係部處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읍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弱한것에 對한 同情이랄까 協助를 얻을수 있었고 또 關係者 모두가法案을 理解했고 必要性을 共感했다는 것입니다. 이런面 앞으로도 圖書館 사람들이 圖書館界의 發展을 為하여 合心하여 努力만 한다면 돈과 權力이 없어도 向上될수 있는 餘地가 있다는 點에 感銘되는바 있읍니다. 또 文教部長·次官任이 무척 이 法을 為해 苦生하셨

읍니다. 最高會議等 關係部處에 急할때는 率先하시어 活躍하셨음을 圖書館協會로서 이 자리를 빌어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法制處의 韓錫範法制官의 勞苦에 對해서도 아울러 感謝드립니다.

**崔洛久** : 金法務官께서 말씀 있었읍니다만 圖書館法이 次官會議에서 却下된 後 圖書館長으로 起任했읍니다.當時 數次 圖書館法을 制定코자 計劃했읍니다만當時 國家의豫算關係를 擔當한 部處와 地方自治를 하고 있는 部處에 負擔이 크기 때문에 反對를 하여 不可能 했읍니다. 제가 在職時 制定코자 했으나 成事치 못했던 點 責任을 느끼는 바입니다.

今年과 昨年の 法과는 内容이 相異였지만 法制定을 為해 協助部處 即 豫算을 가진 部處와 地方自治의 所管部處와 相議하기 始作했읍니다. 처음은相當히 見解의 差異가 있어 잘되지 않아 圖協의 李局長, 中課長과 더부리 圖書館界의 專門의 内容을 充分히 說明하여 理解를 促求하고 해서 比較的 協助를 입은바 많았읍니다. 그래서 原則의 問題에는 大體로 合議를 보고 들어갔읍니다만 時機가 時機인 만큼 即 각 部處에서 많은法案을 한번에 내었던 만큼 그中 緩急을 가려서 審議하게 되어 이點 苦衷이 많았읍니다. 最高會議第96次常任委員會에서 民政移讓前에 通過시켜야 할法案에 對해 네 가지 原則를 定했읍니다. 이原則은 主로 新憲法에 치축되거나 또는 그에 隨伴되는 法來年度豫算執行에 根據가 되는 法 그 외에 時急한 法令等이原則에 該當되었는데 圖書館法은 이原則에 該當되지 않는다는하여 最高會議에

서 却下된 運命에 놓였던것을 關係官들이 이 法案의 必要性을 認定해 주어서 告白에는 比較的 귀여움을 받으면서 最高會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最高會議에서도 亦是 이 法의 必要性에 認定하여 法이 通過된 것입니다.

제가 圖書館法을 通해 느낀것은 행여 知識人이 모이면 우리나라 文化政策이 너무 弱하다든지 等閑하다는데 對해 不平이 많이 있습니다. 저이들도 圖書館法을 다룰때 關係人士에게 이 法의 內容을 體面를 不拘하고 區區히 說明하여 理解시켰습니다. 처음에는 圖書館法의 必要性은 알고있으나 內容에 드러가 무엇때문에 必要하며 現實的으로 보아 어찌한 實利가 있느냐 하는點 理解못하였으나 그 骨子를 仔細히 說明함으로서 더 納得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切實한 必要性을 政策樹立과 同時に 關係要路에 機會있을 때마다 理解토록 努力を 거듭해야 圖書館界가 앞으로도 發展을 바랄수 있지 않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法中 公共圖書館의 入館을 無料로 한다는것은 처음에는 草案에 들어있으나 公共圖書館을 各自治團體마다 設立한다면 많은 經費와 人員이 所要됩니다. 이 人件費에 對하여相當한 論議가 있었으며 이로 因하여 流產될 危機에 까지 數次 다달었으나 우리나라 實情으로보아 困難하여 法에는 規定치 못했으나 받을 수 있다는 程度로서 融通性을 期했습니다. 換言하면豫算이 許容할 時機가 오면 빠질 수 있는 걸을 염려 놓았다고 生覺됩니다.

**李鍾文** : 네, 公共圖書館의 入館料問題에 對해 朴先生任 어떻게 生覺합니다.

**朴熙永** : 公共圖書館의 入館料를 받지 못한다는것은 저이들이 처음에 내세운 主張이 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境遇 圖書館法의 條文을 볼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原來 저이들은 끝끝내 받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崔館長任의 말씀을 듣고보니 條文이 地方自治團體에서 自己네의 條例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또 現在 받고있지 않는 圖書館에서는 繼續해서 받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申淳甲** : 入館料問題에 對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이 入館料는 原則적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받지 않을 수 없는 特殊한 問題가 있을 境遇 받어도 無妨하다고 法條文을 解釋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實際 行政의으로 다루어 질때는 이 入館料를 안받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境遇例外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生覺되며 앞으로도 이 方向으로 다루워져야 될것으로 봅니다.

**金康鉉** : 이 入館料問題에 對해서는 아마 圖書館人들 便에서는 法務官인 저自身에게 遺憾의 뜻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率直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받을 수 있다는 規定을 세우자고 主張한 사람입니다. 이점 한번도 굽히바 없고 繼續主張한바입니다. 왜냐하는것이 가장 重要한것으로 제가 반드시 解明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입니다. 우리가 圖書館法을 만든다고 끌이 나는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한個라도 많은 圖書館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圖

書館法의 主要趣旨가 아니겠습니까. 만들고 育成하는것이 問題가 되는것입니다. 自治團體에서 圖書館에 理解 깊은 사람이 努力만 한다면 設立은 容易하고 全國的으로 多數의 圖書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維持하는것이 더 重要합니다. 特히 우리나라 自治團體의 財政實情을 볼때 地方自治團體收入이 極히 微弱하여 國庫補助를 받고 있는데 그럼 國庫補助에서 圖書館運營에 對한 補助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圖書館은 못세웁니다. 圖書館維持를 爲해 補助費가 없다면 解決을 如何하느냐 여기에서 빠져 나올 구멍이 必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不利합니다. 設立한後 著起될 問題가 더 큽니다. 그려기 예문에 이를 爲하여 法을 만들때 融通性이 없으면 困難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自治團體가 自營이되고 또 國庫에서 더 補助한다면 받을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서 國庫收入을 만들어본들 얼마 되겠습니까. 現在 事情은相當히 困難하니까 法으로서는 적어도 現實의 可望있는 法條項을 만들어 야서 現實事情을 度外視한 法條文을 만들어서는 그 法이 融通性이 없는 法이 되고 말것 아님이라고 主張한 것입니다. 그것은 後에 運營해 보면 어느쪽이 더 實質으로 절 된것인지 比較되겠읍니다만 좋은대로 次後 改正될 수 있는 것이니 그點 내가 어떤 偏見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法理論으로 보아서 公共團體가 营造物을 運營할때는 그 营造物을 利用하는 手數料 또는 分擔金이 있읍니다. 例하면 公立의 中·高等學校에 學生을 보낼 때 授業料를 받지 않는것이

理想的의지만 授業料를 받게 되어있읍니다. 이런點을 華서 入館料에 關한것을 全的으로 無料로 한다는것은 困難하다는 것입니다. 圖書를 갖지 않은者에게 開覽시킨다는 點이 있겠으나 法理論上 無料가 어렵고 現實의 問題에 있어서도 빠져나갈 길을 터 놓는것이 理想의 아닌가하고 끝내 主張해온 것입니다. 이런것은 나중에 批判의 對象이 되어 나쁘면 改正이 될 것으로 암니다.

李鍾文：저이는 第8條의 入館料와 그外 2, 3種의 條項에 對해 不滿스럽게 生覺하고 있습니다. 入館料問題는 金法務官이 한번도 굽침없이 主張하셨는데 이點 저와 여러번 意見의 對立이 있었읍니다. 저이가 理念의으로 生覺할때 公共圖書館은 入館料를 받을 수 없는것이 原則이라 봅니다. 隣國인 日本에는 받을 수 없다고 明文化되고 있는것은 좋은 예입니다. 저이 나라에 있어서는 事情이 다른만큼 안받는것을 原則한다는點 双手로賛成입니다. 但 이런 條項이 나온데 對해서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이 條項을 보면 公共圖書館은 使用者에 對해서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草案할때는 못받는것을 原則으로 하되 받을 수 있는 即 빠질수 있는 구멍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腹心하여 이런 條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條項을 圖書館法에서 言及치 않고 刪除해 버리면 어떠나하는 點 強調했읍니다. 그러면 받는다. 안받는다에 言及을 안하면 받을 경우는 받고 안받는데는 그대로 좋은데 이 條項을 넣어서 法文에라도 後進國임을 뜻박을 必要가 없지 않느냐 하는 生覺에서 옆읍니다. 그런데 法을 다루는

分들이 法體裁上 이것이 있어야된다고 強調했습니다. 그런데 最高會議에 올라가서는 받을 수 없다. 但 받을 수 있는 境遇 文教部長官의 事前 別途의 承認을 받는다고 條文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이 圖書館人의 主張과 文教部側主張의 折衷이었지요. 그래서 저이는 圖書館法에 있어 體面를 세웠다고 生覺했는데 다음날 再審議에서 다시 削除되고 原來의 案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意見이 있었읍니다만 圖書館界에서는 앞으로 이에 對해 많은 批判과 論亂의 對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圖書館法에서 저이가 第一 궁금하게 生覺하고 있는 第7條에 關해서 朴理事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朴熙永** : 第7條가 公共圖書館이 되어 있읍니다. “豫算의 範圍內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해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原來 저이가 目的한 것은 義務條項으로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館을 만들 것을 願했드렸습니다. 그런것이 이번 圖書館法에는 育成에 努力해야 된다고 制定되었습니다. 여기가 失望된 點이며 強制規定이 되었으면 했던 期待에 벗어난것이 되었습니다.

**金康鉉** : 第7條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角度에서 評價를 해봐야 겠습니다. 하나는 圖書館人의 立場과 또 하나는 圖書館과 相關이 없는 第3者一勿論 全然 相關이 없다고는 못하나一直接 密接한 對象이 아닌 者의 立場입니다. 첫째 圖書館人의 立場에서 볼 때 모든 社會의 人士들이 讀書를 즐기고 境

遇에 따라서는 相互 어떤 娛樂도 갖는 立場에서 鄉土愛와 같은 그러한 性格에서 모든 公共團體는 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強制性을 欲與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第三者의 立場, 法理論의 仁面에서 볼 때는 이것은 事實上 憲法精神을 違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地方自治團體란 것은 國家의 事務外에 固有의 事務를 中心하여 成立되고 있는데 이 圖書館이라든지 其他 社會福祉行政이란 것이 根本적으로 固有의 公共事務입니다. 固有의 公共事務는 地方自治團體가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圖書館外에 體育館을 더 많이 設置하느냐 圖書館을 더 設置하느냐 함은 그 自治團體의 議會가 決定할 問題이자 法律이 너는 圖書館을 꼭 設置하라 其他의 것은 안해도 좋다는 式으로 規定하는 뜻입니다. 體育法에서 體育館을 꼭 設置하라 또 다른 音樂分野에서 音樂館을 設立하라 等等이 모다 된다고 假定한다면 自治團體의 任意의 事務 即 固有事務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國家의 命令에 依해서 國民學校를 設立한다는 境遇와 같이 되어버리는 만큼 現在 圖書館法에 規定된 條項內容이 法理論上妥當하다는 見解입니다. 然而나 우리나라의 實情과 財政事情으로 봐서 任意規定으로 해둔다면 設立하지 않을 터인즉 圖書館人은 國家가 設立해 주라는 規定을 해주라는 義務規定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中央政府의 國庫에서 60%以上의 設立豫算을 補助하여야 된다는 別途條項이 挿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國家가 自治團體에 法律로서 어떤 意思를

強制할 때는 그에 對한 對價를 自治團體에 支拂해야 되는 것이며 國家의 實情으로 봐서 이것이 實現되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에 對한 慾心을 내지 말고 이 程度로서 正常的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教育自治法도 같이 되었으니 自治團體의 教育長이 義務의 아니라도 그가 努力만 한다면 設立될 수 있는 만큼 法에서 할 수 없는 것은 行政力으로서 可能하게 推進될 수 있는 것으로 암니다.

李鍾文：公共圖書館問題에 있어서는前述한 入館料와 같이 不足感이 있는 바 여기에 對해 申課長任의 말씀을 付託드립니다.

申淳甲：方今 金法務官任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法理論上로 봐서 圖書館이라 하면 地方自治團體의 營造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營造物로 볼 때는 固有事務가 되겠는데 圖書館이 가지는 機能面으로 보아 이것은 國家의 社會教育機能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亦是 國家事務와 關係가 있다고 보는 見地에서 外國의 例를 보면 公共圖書館法에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는 義務規定을 두고 있습니다.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에 關해서는 大體로 세 가지로 區分된다고 보는데 첫째 地方自治團體는 期必 公共圖書館을 設置하도록 強制規定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金法務官의 말씀과 같이 自己들의任意規定으로서 自治團體가 固有事務로서 設置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것과 또 남아지는 우리가 取한 規定과 같이 中間을 擇하는 強制規定도 放任하는 規定도 아닌 即 國家나 公共自治團體는 圖書館을 設置, 運營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即 上述한 中間規定을 뜻하는 것입니다. 要는 設置規定보다도 公共圖書館을 政策的인 面에서 볼 때 많이 設置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韓國에는 公共圖書館이 27個館밖에 없읍니다. 外國과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의 差異가 있습니다. 公共圖書館이 社會政策面에 影響을 주는 點이相當히 많은 만큼 政策的인 面에서 公共圖書館을 많이 세워야겠다는 見地에서 考察할 때 强行規定을 둘이 바람직한 것이나 昨年에 開議에 上程된 案은 이것을 强制規定으로 했기 때문에 失敗를 하였으니 이 점 參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것은 文教部가 中心인 만큼 重點으로 生覺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圖書館人의 集合體인 圖書館協會에서도 이런 点 앞으로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規定을 만들 수 있는 需要氣와 契機를 繼續적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될 課題인 것으로 봅니다.

李鍾文：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圖書館法을 推進하면서 큰前提가 두 가지 있었읍니다. 하나는 公共圖書館을 비롯해서 學校圖書館을 義務的으로 設置하도록 함께 한 問題가 있고 또 하나는 圖書館에서 從事하고 있는 司書職의 專門性을 確立해서 社會의 法的인 保障을 받도록 하는 두 가지 點의 重要性을 갖고 있읍니다. 이런 点 法制定에 있어서 行政적으로 內務部와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므로 強力한 要求를 했고 內務部에서는 公共圖書館의 義務的規定에 對해서는相當한 反對가 있어 隘路가 많았는데 이 점 國立圖書館長任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崔洛久：네, 이 법을當時草案했을 때는義務規定으로 했드렸습니다만 이번任意規定으로 바꾸어진것을 金法務官께서는法理論을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事實上의事情이 그렇게 된것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하면 昨年에도 次官會議에서 否決된重要的骨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義務規定으로 한다면前述한바와 같이自治團體單位로 公共圖書館을 強制的으로 設置하게 되니負擔이 큼으로 積極反對되 있고 우리의實情으로 보아 公共圖書館을 많이 設置한다는것은 困難한 일입니다. 따라서現實的與件으로 봐서는 이번法規定과 같은것을 만들지 않으면 法이 안되는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今年에도 이것을義務規定으로 했다면 當初부터 內務部와는妥協이 不可能했을 것이며 아울러 次官會議에도 通過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當時는現在보다與件이相異하였으며 現在는教育法이改定되어 教育自治制가確立(education自治法이 圖書館法과 同日字로 通過)되었기 때문에公共圖書館을設置할責任者가自治團體의教育長이 되겠습니다만 그當時는市長, 郡守가責任者였기 때문에 內務部에서應해 줄수없는形便이었고 그래서이와같은與件下에는 이번같은法制定이不可避한것이었습니다.

李鍾文：이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는義務規定이 아니고 勸獎規定이 되어 있읍니다만 未久에 圖書館法이改正될때義務規定으로 꼭改定되리라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問題인 司書職員에關한것으로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第6條

에司書職員의 配置가 있습니다. 여기서第4項에는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에는閣令이定하는바에依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關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한다.” 또 第2項에는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關하여 必要한事項은閣令이定한다”라고 되어있는데 第6條의 精神을 보면學校圖書館 即 專門學校以上 大學에는專門職司書, 初·中·高等學校에는司書教師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第26條(職員)에 보면學校圖書館의職務를擔當할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校에는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에는各名司書教師 또는司書의職務를擔當할教師를 두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있어司書 및司書教師 그리고司書職務를擔當할教師의概念에對해서法務官任 말씀을付託드립니다.

金康鉉：두가지로區分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共圖書館 또는 國立圖書館의境遇專門的인司書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國家公務員法에 있어司書職의概念이나와 있으니 크게論證할바는 없겠지만 그內容을試驗치루는것이 아니고 實際的으로養成하는式으로資格을주느냐 하는것은 앞으로閣令으로서規定되겠습니다만法令의界限를 떠나서도 많은論議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學校에 두는境遇인데司書教師, 司書를擔當하는教師입니다.司書教師의資格이 없는 사람이司書職을擔當할수 있다는것이 아니고至今 우리나라事情으로 봐서司書教師를另

途配定하기가 難處하게 되어 있습니다. 哪나하면 國民學校의 境遇 學級이 5個라 한다면 學級擔當教師外에 司書職教員이 있어야겠는데 그 T.O.가 없는 것입니다. 養護教師는 T.O.가 確保되어 있습니다만 T.O.가 없기 때문에 學級 擔當教師가 司書職을 함께 擔當해야 되겠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多幸히 學級教師와 司書教師의 資格을 함께 가진 사람이 같이 業務를 맡게 되면 問題도 解決되는데 5個의 學級擔當教師中 司書의 資格이 모두 없고 司書教師 T.O.가 없다면 結論的으로 配置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當初 學級擔當教師中 어느 教師를 指定하여 司書職을 兼務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런 境遇學校에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는 法의 精神에違反이 되니 法의趣旨를 살리기 為해서는 教師를 司書教師로 配置할때 그 教師가 司書職에 對한 特殊한 訓練을過去 가졌거나 圖書管理에 經驗이 있는者를 選定하여 再配定해야 되는 것입니다. 中·高等學校의 境遇 T.O.上에 어느程度의 餘有가 있으니 이點 解決될 수 있는 問題라 봅니다. 國民學校에는 現實的으로 어려운 隘路가 있으니 이런 點法理論을 떠나 政策的으로 司書의 養成等을 實施하여 圓滑을 期할수 있도록 漸次 計劃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生覺하고 있습니다.

**李鍾文** : 이 問題에 對해 社會教育課長任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

**申淳甲** : 이것은 原則論으로 따지면 圖書館이 專門性을 高度로 要하는 職이니만큼 이러한 專門性이 強한 職務를 擔當하는데는 專門의인 教育을 받은 司書가

絕對必要하다고 큰 關心을 갖고있으며 圖書館에 專門人을 配置해야 될 것이 要請됩니다. 이런 概念을 金法務官任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國家機關일때 司書職은 國家公務員法에 規定되어 資格을 가지며 一定한 訓練, 詮衡, 試驗에 合格한 사람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私立學校의 境遇 이에 準하여 資格을 가진다고 보겠는데 具體的인 것은 開令으로 定하게 될 것입니다. 司書擔當教師는 司書教師로서의 資格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司書教師에 關한 것은 現在 教育公務員法에 司書教師制度를 새로 規定하고 있습니다만 亦是 거기에 보면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나온 分이나 또는 一般教師로서 一定한 課程의 講習을 받은 사람이 司書教師의 資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이들은 原則을 두자는 것입니다. 각學校는 司書教師로서 別途 配定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國家의 財政과 關聯을 갖게 되므로 現實이 容易치 못하니 財政의으로 어렵고 또 司書教師의 訓練을 받은 分이 極히 少數인 만큼 需要에 充當하지 못하는 財政의in 面과 現在 人員不足等을 考慮해서 여기 救濟의 길로서 司書를 擔當하는 教師를 現職教員이 兼職도록 한다는 規定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分이라도 一定한 訓練을 받은 사람이 擔當하면 될 것입니다.

**李鍾文** : 司書教師, 司書職員問題는 저이가 生覺하는 法의 性格을 決定하는 두 세 가지 重要한 問題의 하나로 生覺하고 있습니다. 제가 記憶하기는 最高會議文社委員會에서 이 問題가 審議되었을때多少 時間이 걸려 이 關係條項에 對한

討議가繼續되었고 거기서 司書職務를擔當할 教師라는 明文이 添加되었읍니다. 저이가 生覺하기에는 司書教師는 어데까지나 教師다. 教師가 學校圖書館의 일을 본다. 그런데 教師가 가르키는 일을 아니하고 即 教壇에 서지 않고 圖書館의 職務에만 專念하는 司書教師를生覺할수 있고, 또 가르키면서 圖書館의 職務를 兼務하는 것을 生覺할 수 있읍니다. 現在 韓國의 實情에서는 우리가 處해 있는 形便으로서는 專擔司書教師를 두는것이 希望이지만 兼任으로서도 運營이 可能할 것으로 生覺하고 있읍니다. 法에 司書教師 또는 司書를 擔當하는 教師라는 條項에 對해서는 現在 圖書館法이 司書教師를 꼭 두어야 한다고 規定해도 이 法이 公布되어 나오면 國家가 이 法을 違反하게 될 것입니다. 그 理由는 學校가 모다 資格있는 司書教師를 두려고 해도 둘 수 없는 形便입니다. 이點 重要한 問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最高會議에서 論議될 때 韓國에는 教師資格者로 圖書館教育을 받은 即 司書職을 擔當할 수 있는 教師가 200名이 未達이므로 法이 公布되면 全國에 사람들을 全部 配置하기 困難하니까于先 司書教師가 있는 學校에는 이들에게 充當시키고 없는데는 教師中에서 司書職務를 맡도록 任命하고 任命한 直時 文敎部長官이 委嘱하는 機關에서 所定의 訓練을 받도록 해야될 것으로 암니다. 이러한 講習課程에서 司書教師가 具備되어야할 資格要件를 가지서 司書를 擔當할 수 있게 教師를 養成하도록 저이들이 細密한 檢討와 研究를 함으로써 將次 圖書館法이 改正될 段階에 가

서는 全國의 學校에도 옳은 資格을 具備한 司書教師를 제대로 配置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이 條項에 關한 일은 大端 스리 問題가 안 될것으로 生覺하고 있읍니다.

崔洛久：이 點 圖書館法에도 第一 重要한 部分으로 生覺되며 最高會議常任委員會서도 司書教師 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한다는 點相當한 論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司書 또는 司書職員을 둘 라면相當한 人員이 要求될것이 아니냐換言하면 T.O.가 增員되어야 하지 않느냐는것에 論亂이 많았읍니다.前述한 바와같이 正規圖書館學科, 또는 講習課程을 履修하여 資格을 具備한 사람이僅少하고, 또 많다해도豫算上一括 配置한다는 것은 國家의으로 至難한 處地인 것입니다.

李鍾文：이제까지 全文 29條에 걸쳐 問題가 되는點 추려 討議한것으로 암니다. 法을 만들면서 저이가 오히려 現在 韓國의인 奧件, 좀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해야될 좋은 事業은 너무나 많고 그것을 着手해서 推進하기는 너무나 國家나 國民의 財政形便이 窮乏하여 이런 程度의 法이나마 만들었다는點 自慰치않을수없고 또 오히려 자랑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點 몇가지가 있지 않는가 生覺됩니다. 例를 들면 公共圖書館에 어린이部를 設置한다든지 昨年까지 中·高等學校以上에만 學校圖書室을 設置토록 規定한것을 이번에는 國民學校까지 包含시킨 點. 저이들 立場에서는 幼稚園까지 넣는것을 主張했읍니다만理解를 얻지 못했읍니다만 一玆 私·公立 公共圖書館에 政府 또는 地方自治

團體는 財政 其他の 援助를 할 수 있다는 點 더 나아가서는 公共圖書館을 세우는데 있어 道·市는 環境造成을 為하여 格別히 努力を 해야 된다는 規程을 넣은點 等等 보람있는 일이 된것으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이런 面에서 社會敎育課長任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申淳甲** : 저는 우리나라의 圖書館法의 性格에 있어 圖書館事業에 關한 綜合的인 基本法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例를 보면 國立圖書館法이 있고 圖書館의 基本法으로서의 圖書館法이 있으며 또는 學校圖書館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圖書館法 속에 基幹設置法의 要素 그리고 學校 또는 學校圖書館, 公共圖書館, 特殊圖書館等에 關한 것이 綜合的으로 規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圖書館에 關한 것은 圖書館法 하나로써 우리가 總括的으로 把握할 수 있다는 것, 體系를 세워서 全部理解할 수 있다는 것에 利點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方今 李局長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는 施設面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圖書館이 設置되어서 運營하는데는 施設面과 人事面이 있습니다. 施設面에는 閣令으로서 定하게 되어 있습니다. 基本의 事項에는 이 圖書館法에도 規定이 되어 있는데 특히 圖書館의 位置 環境이라든지 利用에 便利해야 된다. 或은 保健, 衛生, 管理에 適合해야 된다. 그리고 專門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의 여러가지 施設, 여기서는 圖書館資料, 建物構造, 閱覽施設이라든지 其他 備品等을 들어 놓았읍니다만 이런것이 앞으로도 具備되도록 閣令으로 詳細히 規定되어 나올것이라고 믿습-

니다. 이런것이 法으로서 基礎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圖書館이 施設面에 있어 內容의인 充實을 期할 수 있는 基準이 되지않나 生覺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學校圖書館에 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學校圖書館에는 高校以下와 專門學校 또는 大學以上을 나누어 別別하고 있습니다. 高等學校以下 國民學校까지는 圖書室과 圖書館을 設置하고 專門學校, 大學以上은 期必 圖書館을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昨年까지의 草案을 보면 大概 中等學校以上에 圖書室, 圖書館을 두도록 했습니다만 今般에는 國民學校까지 擴張해서 設置하도록 한 것은一步 前進된 法規定이 된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現在 國民學校에 圖書室을 設置한곳이 極少입니다. 具體的 施設基準이라든지 또는 年次의in 設置計劃에 關한 經過規定은 將次 閣令으로 別途 決定되겠습니다. 如何든 國民學校 以上에 圖書室, 圖書館을 設置한다는 것은 學校敎育에 있어 圖書館은 敎育의 心臟部가 된다는 것을 볼때 兒童들의 學習活動이나 地域社會에 至大한 貢獻이 있을 것을 期待하고 있는 바입니다.

**金康鉉** : 圖書館法에 對해 總括的으로 말씀드리면 圖書館法이라는 立場보다도 이 法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의 잊어버렸던 分野, 即 關心이 別로 없었던 分野에 對해서 關心을 갖게 된 結果가 되지 않았느냐, 可令 地方自治團體에 施設을 한다 事業을 한다해도豫算이 없을 뿐 아니라 着想이란것이 極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것이 擡頭되었을때 着想이 容易하고 또 圖書館에 關해 어떤 關心

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 意思를 集中시키기가 容易한 것입니다. 即 어떤 設置經營할만한 主體者의 立場에 있는 사람에게 着想을 끌기 쉬울 뿐 아니라 國民에 對해서도 關心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圖書館法의 制定이란 當然히 關心을 갖았어야 할 잊어버린 分野를 끌어올리는 結果가 된것으로 봅니다. 原則上으로는 이것은 大陸法系의 精神에 따르자면 立法까지 해야할 事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獨佛 같은데서 立法이라 하면 國民의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은 반드시 法律로 定해야되고 그 남아지는 法律이 아니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問題는 原則적으로는 自治團體의 條例, 規則 등으로 實踐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境遇 그렇게 하면 統一도 안되고 또 남들이 볼때에 明確치 못하다는 點에서 最近에 大陸法系를 따른 日本의 境遇도 이런 關係의 法令을 數多히 만들고 있습니다. 即 嚴密한 意味에서 立法事項이 아닌것을 立法事項으로 해가지고 社會教育乃至는 經濟行政等 모든 分野에 適用하고 있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圖書館法의 制定이 圖書館活動乃至는 社會教育에 크다만 하나의 動議를 賦與하는 結果가 되지 않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그러한 精神과 動機에 附合되도록 行政的으로 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點 두가지로 生覺되는데 첫째는 施設을相當히 擴充시켜야 할 方針을 세워야겠고 둘째는 그러한 施設을 利用하는 데 積極性을 期하여 讀書할 수 있는 動機를 만들 수 있는 方針을 計劃해야 된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積極的인 讀書勸獎은豫算과는 크게 關聯을 맺는것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代身 時間과 努力이 大端히 必要하겠습니다. 이런點 關係人이 施設 其他 內容設備等에 充實을 期할 수 있는 方策을 講究해야 되는 것이며 둘째 利用者들이 積極的으로 閱覽을 할수있는 方便을 組織的으로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의 所感은 大體로 이런데 있습니다.

崔洛久 : 이 法制定이 아까 具體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8年間이란 오랜 世月 끝에 制定되었다는 點 遺憾스럽긴 합니다만 그 代身 內容面에 있어相當히 現代化된 것으로 보아 多幸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圖書館을 設立한다는 것도 重要問題지만 如何히 하면 一般의 利用에 効果的으로 奉仕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은 저들 圖書館에 從事하는 館人으로서 誠意를 다하여야 될것으로 生覺됩니다. 한便 이 施設面에 있어서 現在 公共圖書館이 27個가 있다고 하지만 國立圖書館을 除外하고는 한 圖書館에서 書籍이 萬卷以上 있는곳이 別로 없습니다. 遺憾스럽습니다. 이제 教育自治制가 確立되었으니 設立者와 運營의 責任者は 自治團體의 教育長이 될것이니 圖書館을 設置하고 이 圖書館의 最少限度의 面貌를 가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至大한 關心을 傾注해야 될것으로 암니다. 그리고 國庫補助金에 對해서도 現在의 財政規模로 보아 期待하기 어렵잖은가 봅니다. 이번 法制定에 있어서도 事實은 經濟企劃院에서 우리 法과 거의 같은 內容의 補助할 수 있다는 規定이 包含된 法案이 數個 있었읍

니다. 圖書館法이 어떤 權力を 內包한 法이고 利權이 介在되었다 할것 같으면 經濟企劃院의 協助는 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圖書館法이 落後된 文化를 우리가 이 法을 通해서 早速한 時日內에 向上 시켜야겠다는 慎慾에서 積極協助가 있은 것입니다. 圖書館法關係로豫算局(經濟企劃院)에서는 關係課長會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他法과 같은 待遇를 받기 為해서 鬪爭까지 해야 될것이었으나 모두가 이 運命에 嶄驟하고도 불쌍한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切實히 認定해 주어 힘을 모아 주선點至極히 感謝했습니다. 勿論 여기서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司書職員을 配置하게 되어 있고 司書職員을 配置하는데 있어서는豫算範圍內에서 補助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것은 地方自治團體의 設立者가 自體豫算에서 設置運營해야 될것으로 보아 너무 過分한 것은 期待하기 어렵습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圖書館設立者乃至 圖書館에 從事하는 사람이 앞으로奉仕에 對한 热誠이 圖書館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朴熙永：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점 法에 對한 總評이랄까 이런면에서 朴理事任 말씀을 付託드립니다.

朴熙永：圖書館法에서 우리 圖書館人들이 바라든 重要한 條項이 第6, 7, 8條에 收錄되어 있습니다. 이 3個條에 完全히 滿足키 어려우나 制定은 되었습니다. 아울러 圖書館法에서 우리나라 圖書館의 位置가 그레도 뚜렷해 졌습니다. 于先 圖書館이란것을 國家가 볼때 國民의 教育과 文化的 向上에 寄與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하나는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하는 施設이 圖書館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原來 希望하던것 보다는 좀 거리가 있으나 現實의 으로 圖書館의 概念이 明白해진 것입니다. 第5條에 圖書館이란 必要한 建物과 圖書館資料와 閱覽施設과 그外에 여러 施設이 있어야 圖書館으로서 形成될수 있다고 했고 圖書館의 環境과 施設이 利用에 便利하고 管理, 保健, 衛生에 適合하여야 한다는點 우리들과 生覺이 附合되는 適切한 規定입니다. 이렇게 圖書館法이 制定된 오늘날 우리 圖書館人들이 다만 바라는 것은 強力한 國家政策의 實踐이고 그것에 따른 偉大한 賦權으로 우리들 人의 努力이 必要한 것입니다. 우리가 圖書館法을十分 利用하여 將次 훌륭한 圖書館 國家를 이루도록 努力해야겠습니다.

李鍾文： 좋은 말씀입니다. 罪極합니다만 저이가 이 法案에 있어多少 不滿스런 點이 있음은 어쩔수 없습니다. 不滿스런 點이란 것을 너무 理想의이라고 責하시도 할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이들이 生覺할 수 있는 限度에서 規定지울수 있는 몇가지 條項에 對해서는 滿足를 하지 않지만 國家에서 現在 어려운 處地에서 圖書館法을 制定해 주었다는點 現時點에서 볼때 大端히 重要한 것이라 봅니다. 國家가 圖書館法을 制定한다는 것은 圖書館事業을 國家가 國家事業의 一環으로서 앞으로着手해서 推進하겠다는 意思의 表示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圖書館法을 圖書館人이 모여 推進한지 8年, 그리고 時機를 捕捉하여 今年 다시着手한 것이 지

난 6月以後 4個月間 主務課와 法務官으로부터 局長會議・次官・長官을 거쳐 法制處로 가고 法制處에서 修正된것을 次官會議로 올라가고 여기서 内차례나 審議가 保留되어 時間을 끌었으나 文教部 尹泰林次官任의 積極的인 推進으로 通過되고 閱議도 또 여기서 通過하여 最高會議運營委, 文社委, 法司委, 또다시 運營委 그리고 常任委員會까지 12個段階를 거쳐 이 圖書館法이 制定되었습니다. 感慨 無量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法을 가지고 저이들 圖書館人們은 國家와 民族에게 專門職으로서 땀과 努

力を 쏟아서 韓國의 圖書館人으로서의 밀은마 職分을 다할것입니다. 이 法이 지난 國家의 文化的 意義는 크며 이法의 運營을 通하여 圖書館發展外에도 教育界 學術活動을 하는 著者 出版界 및 外國書籍이나 國內書籍을 다루는 書籍界等에도 하나의 活路를 마련하였다는點에도 意義가 클것임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圖書館法의 改正을 볼때는 보다더 理想의인 法이 制定될것을 다짐하면서 바쁘신中 나오시어 좋은 말씀 感謝를 드립니다.

任 鍾 淳 著

## 分類表比較研究,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 학과, 1963.

213p. 26cm (연세 대학교 도서관학 축서 제13집)

값: 300 원

판매처: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